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조문의 보완·이동 등 〉
■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834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조문의 보완 · 이동 등	2

I. 제안경위

2025년 3월 12일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3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의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및 제47조제3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조문의 보완·이동 등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사업자의 정보 제공·열람 명령 신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명령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조문을 제47조(과태료 등)¹⁾에서 제6조의3(이행강제금)으로 보완·이동하여, 현행법의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안 제47조제2항 삭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6조의3(이행강제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제5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1억원의

- 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47조(과태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제37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제37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② 제6조제5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마다 1억원의 범위에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일수를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제47조(과태료 등) ① (생략) ② 제6조제5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마다 1억원의 범위에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일수를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u>범위에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일수를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제47조(과태료 등) ① (현행과 같음)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현행법은 제47조(과태료 등) 제1항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의 신고의무 위반에 과태료를, 제2항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사업자의 정보 제공·열람 명령 신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명령 미이행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음.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21년 3월 23일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행정에 관해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행정기본법」 제3장 행정작용(제14조부터 제37조까지)에서는 처분, 인허가의제, 과징금, 행정상 강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제31조에서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규정할 사항, 부과 금액, 계고·통지·징수 등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법률에 이행강제금의 연간 부과 횟수를 구체화(매년 1회 1억원의 범위)하고, 현행 시행령으로 규정 중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르도록 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42

**[행정기본법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상
이행강제금 규정]**

-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고지, 문서통보, 연1회 부과 등 규정

「행정기본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령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이행강제금 부과에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를 규정할 경우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부과·징수 주체 2. 부과 요건 3. 부과 금액 4. 부과 금액 산정기준 5.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	제44조(이행강제금)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제5항(법 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이행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명령을 이행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이항에서 “명령불이행기간”이라 한다)이 365일 미만인 경우: 1일당 15만원 2. 명령불이행기간이 365일 이상인 경우: 365일이 되는 날부터는 1일당 25만원

2. 의무 불이행의 정도 및 상습성 3. 그 밖에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③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간 동안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및 이의제기방법 등을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행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u>매년 1회</u>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	--

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